

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(Q&A)

Q1. 졸업예정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학과에서는 졸업예정자에게 충분히 공지 및 개별 안내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Q2. <4학년 이상(4학년 재학생) 및 수료생 교직이수자 명단> 이 전부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인가요?

아닙니다. 무시험검정원서는 이 중 졸업예정자만 제출합니다.

위 명단 중 수료예정자나 수료불가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가 아닙니다.

Q3. 졸업예정자(또는 수료예정자) 중 교직이수 기준 미충족자는 어떻게 하나요?

졸업(또는 수료)가 불가합니다. 단, 학생이 교직을 포기하고 졸업(또는 수료)만 희망하는 경우 <교직이수 포기원>을 교직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[\[서식다운로드\]](#) ※ 미제출 시 졸업(수료) 불가

Q4. 교직이수 기준에 대한 이수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
1. 교육봉사활동

: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최종 수강 등록 학기 종강일 까지 마치셔야 수료, 또는 졸업이 가능합니다
(`23년 8월 졸업 또는 수료예정자 ▶ `23년 6월 30일까지 교육봉사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
2.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, 성인지교육

: 교과목으로 인정 불요하므로, 수료 이후에도 인정 가능(단, 반드시 졸업학기까지 마치셔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)

3. 교과목 이수

: 수료, 또는 졸업 판정 이후에는 교과목 수강이 불가능하므로, 판정 전 교직이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 ▶ 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 팀에서는 졸업사정결과를 일괄 작성하여 `23.7.28(금)까지 교직팀으로 공문 제출 부탁드립니다.

★주의요망★

졸업사정 결과 '졸업예정'이었으나, 졸업유예신청 기간 중에 '졸업유예'를 신청한 학생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!!

요약(Summary)

◆ 졸업예정자 ▶ 무시험검정원서(또는 교직포기원)을 <붙임3.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명단>과 같이 공문으로 제출 : `23.7.17(월)

◆ <4학년 이상 교직이수자 명단>에 졸업사정 결과를 작성하여 각 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교직팀으로 공문 제출 : `23.7.28(금)

<수강신청 확인원> 출력 방법 (중앙대학교 포탈)

포탈 <수강신청 확인원> 메뉴에서 출력 가능

- 중앙대학교 포탈에서 강의마당 ▶ 수강신청확인원으로 이동
※ 수료생은 수강 중인 과목이 없으므로 출력할 필요 없음



2023-1학기로 조회 후 출력

- 계절학기로 세팅되어 있을 경우, **2023-1학기로 선택 후** 조회
※ 하단 확인자란에 서명은 필요 없음

CAU 중앙대학교 즐겨찾기 정보마당 학사마당 **강의마당** e-상담센터

수업	성적
강의계획서검색 ★	보관성적조회 ★
강의시간표조회 ★	졸업관련성적조회(학부) ★
동일대체과목조회 ★	성적인정신청 ★
수강내역조회 ★	수시성적조회 ★
수강신청확인원 ★	
개인시간표 ★	
강의Feedback ★	

CAU 2030 Global Top Tier University